

투자 위험 등급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 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키움연금자자손손백년투자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움연금자자손손백년투자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키움연금자자손손백년투자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
|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작성기준일 | 2016년 09월 30일 |
|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6년 10월 28일 |
|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
|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Tel. 02-789-0300, 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 Tel.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 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약 정 보

(작성기준일: 2016.09.30)

키움 연금 자자손손백년투자 전환형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펀드코드: A5239]

투자위험등급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키움 연금 자자손손백년투자 전환형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을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 투자신탁으로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전환형
집합투자업자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 02-789-03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판매] 기간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16년 10월 28일
효력발생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투자신탁
가입자격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보수 (연, %)	판매	0.95
	운용 등	집합투자업자보수: 0.35, 신탁업자보수: 0.03,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0.015
	기타비용	0.0001
	총보수비용	1.3451
합성 총 보수·비용		1.3453

주1) 판매 및 운용 등 보수 지급시기: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주2)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유발생시 지급합니다.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5.08.29 ~ 2016.08.28]

주3)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총보수·비용의 경우 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및 비용 포함

매입 방법	15시 30분 이전: - 제2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환매 방법	15시 30분 이전: - 제2영업일 기준가/ 제4영업일 지급
	15시 30분 이후: - 제3영업일 기준가격 적용		15시 30분 이후: - 제3영업일 기준가/ 제4영업일 지급

기준가	산정방법: 당일 공고 기준가격 = 직전일 순자산총액/ 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으로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 준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자산의 90%이상을 ‘키움 블루칩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합니다.

※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A. 키움 블루칩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으로서 주식투자를 통한 자본이득 및 배당 이득을 추구합니다. 특히, 각 업종 대표주로 구성된 블루칩 모델 포트폴리오에 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비교지수: KOSPI 지수 × 100%

- 주1) KOSPI 지수: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된 주가지수 (지수현황은 www.krx.co.kr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주2)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개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시장 상황 및 펀드 운용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및 비교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비교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가능 합니다.

3.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키움 블루칩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90%이상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입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이 투자한 국내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운용전문인력 (2016.09.30 현재)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책임운용 전문인력	박원정	1981년	차장	20개	1,857억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알파운용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단위: %)

종류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5.10.01~ 2016.09.30	2014.10.01~ 2015.09.30	2013.10.01~ 2014.09.30	2012.10.01~ 2013.09.30	2011.10.01~ 2012.09.30
운용(모)	2011.08.29	8.96	1.66	-0.12	-0.69	9.91
비교지수		4.12	-2.84	1.16	0.04	12.80

주1) 비교지수: KOSPI200 ×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1. 주요 투자위험

- 아래 위험들은 일부 주요 투자위험만을 요약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위험관리와 초과수익을 위해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파생상품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위험 등급 분류

-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다소 높은 위험 수준)

※ 상기의 투자위험 등급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12.25%)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위험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최고이사 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리스크관리규정의 재·개정 건을 가지고 있으며, 지침과 펀드 유형별 운용지침 등을 두어 제반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 중요 의사결정을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전략위원회, 집합투자재산평가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독립된 리스크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펀드별 운용목적 및 전략에 부합하는 적정한 리스크 수준 설정하며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를 통한 사전적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별도의 과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자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상기 세제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을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하신 판매회사에 따라 일부 펀드로의 전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키움연금자자손손백년투자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② 키움연금자자손손백년투자40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③ 키움연금알파인덱스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 ④ 키움연금장대트리플플러스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수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집합투자계약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처리합니다.

전환전 투자신탁	전환후 투자신탁	전환전 투자신탁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전환후 투자신탁 매입기준가격적용일		영업일
		15시 30분 이전	15시 30분 이후	15시 30분 이전	15시 30분 이후	
연금자자손손백년투자 전환형1호[주식]	타투자신탁	2영업일	3영업일	4영업일	4영업일	한국거 래소 영 업일
연금자자손손백년투자 40전환형1호[채권혼합]	타투자신탁	3영업일	4영업일	4영업일	5영업일	
연금알파인덱스전환형1 호[주식-파생형]	타투자신탁	2영업일	3영업일	4영업일	4영업일	
전환전 투자신탁	전환후 투자신탁	17시이전	17시이후	17시이전	17시이후	
연금장대트리플플러스 전환형1호[채권혼합]	타투자신탁	3영업일	4영업일	4영업일	5영업일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iwoomam.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iwoomam.com)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8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8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8
3. 모집예정금액	8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8
5. 인수에 관한 사항	8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8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9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9
4. 집합투자업자	9
5. 운용전문인력	10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0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2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2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6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8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21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4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5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26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9
1. 재무정보	29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1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31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4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3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6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6
4. 일반사무관리회사	37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37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37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9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9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41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2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44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45
[붙임] 용어풀이	46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키움연금자자손손백년투자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523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모자형(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전환형(다른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주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입)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키움연금자자손손백년투자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523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주요 내용
2012.08.29	최초 설정
2012.02.06	사무관리사 변경 HSBC펀드서비스 -> 신한아이타스
2012.09.06	환매주기 변경 및 펀드간 전환주기 변경
2013.07.31	-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도입 - 판매보수 인하 - 모펀드 신탁계약 변경(투자제한 예외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등
2013.12.02	-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채권평가사 추가 : NICE피앤아이(단, 2013.12.16부터 적용)
2014.03.21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2014.12.18	- 합병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변경(키움자산운용 → 키움투자자산운용)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지훈 → 박세중)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삭제 - 사무관리사 변경(신한아이타스 □ 우리펀드서비스) 및 채권평가사(에프엔자산평가) 등
2016.02.04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6.01.21) 반영
2016.04.01	- 투자신탁 명칭 변경(키움 연금 승부 전환형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 키움 연금 자자손손백년투자 전환형 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및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추가, 운용역 변경 - 전환형 투자신탁 명칭 및 투자대상 변경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2016.05.27	- 모투자신탁 삭제 (키움연금승부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6.07.02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07.30	- 증권시장 거래시간 연장으로 인한 매입 및 환매, 전환청구 기준시간 변경
2016.10.28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등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키움투자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우.150-886) Tel.02-789-0300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6.09.30기준)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책임운용 전문인력	박원정	1981	차장	20개	1,857억	- Purdue University 산업공학과 - University of Chicago 대학원 금융수학 석사 - 한화자산운용 전략운용팀 - 현재 키움투자자산운용 알파운용팀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알파운용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인력이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당사의 펀드운용은 팀제에 의해 운용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f.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있는 집합투자기구 운용 규모: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3년간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① 책임운용인력

운용역	운용기간
김지훈	설정일 ~ 2014.11.30
박세중	2014.12.01 ~ 2016.03.31
박원정	2016.04.01 ~ 현재

②부책임용인력

운용역	운용기간
엄준호	설정일 ~ 2014.11.30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전환형

키움 블루칩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키움연금자자손손백년투자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나. 모자형구조

-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키움 블루칩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대상	주식: 65%이상, 집합투자증권: 40% 미만, 국내채권: 40%이하
	투자목적	투자대상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 추구
	주요 투자전략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5%이상을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추구. 특히, 각 업종 대표주로 구성된 블루칩 모델 포트폴리오에 주로 투자할 예정임. * 비교지수: KOSPI x 100% * 상기의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개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시장 상황 및 펀드 운용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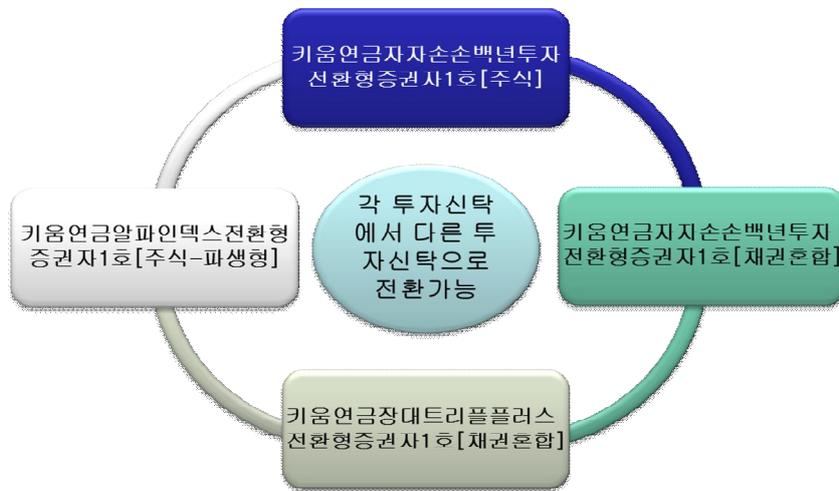
	비교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비교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가능합니다.
주요 투자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주식투자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주1) KOSPI: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된 주가지수 (지수현황은 www.krx.co.kr 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주2) 상기의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개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시장 상황 및 펀드 운용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및 비교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비교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가능합니다.

다. 전환형구조

- 이 투자신탁은 법 232조에 의거한 전환형투자신탁으로 수익자는 투자기간중에 다음의 투자신탁중(이하 “전환대상 투자신탁”이라 함)에서 하나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동시에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전환방법에 대해서는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다. 전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을 포함한 전환대상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키움연금자자손손백년투자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주요투자대상	키움블루칩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90%이상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경기순환 단계별로 손해가 예상되는 업종/테마에 집중 투자 - 공격적이고 역발상적인 투자 방법으로 자산 성장을 도모 - 이익 모멘텀 투자 : 이익 모멘텀의 추종 - 펀드별 운용목적 및 전략에 부합하는 적절한 리스크 수준 설정하여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
키움연금자자손손백년투자40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주요투자대상	- 키움블루칩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40%이하 - 키움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채권] 50%이상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p>▶주식운용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순환 단계별로 손해가 예상되는 업종/테마에 집중 투자 - 공격적이고 역발상적인 투자 방법으로 자산 성장을 도모 - 이익 모멘텀 투자 : 이익 모멘텀의 추종 <p>▶채권운용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수익률과 리스크를 바탕으로 경제 펀더멘탈, 통화정책, 채

		권수급 등의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Duration, Curve, Sector의 주요 전략 의사결정을 거쳐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운용 - 펀드별 운용목적 및 전략에 부합하는 적절한 리스크 수준 설정하여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
키움연금알파인덱스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 [주식-파생형]	주요투자대상	프런티어인덱스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90% 이상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을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인덱스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2) Portfolio Optimization System 3) Black-Litterman Model 을 이용한 바스켓 최적화 - 펀드별 운용목적 및 전략에 부합하는 적절한 리스크 수준 설정하여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
키움연금장대트리플플러스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주요투자대상	- 키움연금장대트리플증권모투자신탁1호[채권혼합] 90%이상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채권운용전략 1) 듀레이션은 1.5년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2) 비관적 시장 예측을 통한 단기적 Duration Betting은 통제 ▶주식운용전략 1) 국내 및 해외 공모주 등에 투자 2) Pairs Trading 전략을 활용한 대차거래 3) 이벤트 드리븐 전략 등 - 펀드별 운용목적 및 전략에 부합하는 적절한 리스크 수준 설정하여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

주) 전환대상 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으로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 준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90%이상	<신탁계약서 제3조 제3항에 의한 모투자신탁> 키움 블루칩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
②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10%이하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③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p>※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②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②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투자신탁 투자대상]

■ 키움 블루칩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주식	65%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법 제 9 조제 13 항의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합니다)
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0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40%이하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및 양도성 예금증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10%이하	장내파생상품: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금리스왑거래: -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집합투자증권	40%미만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의 차입	자산총액의 20% 이하	증권을 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자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고유재산과의 거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2.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 키움 블루칩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구 분	투자제한 사항
투자비율 제한에 관한 사항	<p>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p> <p>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수익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p>

	<p>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p>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4.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p>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6.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8.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합니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p> <p>다.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p> <p>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관련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를 포함합니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9.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법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을 포함합니다)을 취득하는 행위</p>
<p>투자비율 제한의 예외</p>	<p>①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p>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p>

	<p>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p> <p>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p> <p>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p>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6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9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p>③ 집합투자규약 제 19조제2호본문,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 및 법 제229조제1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p>④ 집합투자규약 제17조의 투자대상자산 중 사채권 및 기업어음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의 사유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p>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모집합투자기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자산의 90%이상을 키움 블루칩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 키움 블루칩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① 주식에 대한 투자전략

- 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5% 이상을 투자합니다. 특히, 각 업종 대표주로 구성된 블루칩 모델 포트폴리오에 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② 집합투자증권 및 채권 등에 대한 투자전략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합니다.)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미만을 투자합니다.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0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이하 “채권”이라 합니다)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를 투자합니다.

-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취득시 신용등급이 A2-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합니다) 및 양도성 예금증서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를 투자합니다.

- ③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으로서 주식투자를 통한 자본이득 및 배당이득을 추구합니다. 특히 각 업종 대표주로 구성된 블루칩 모델 포트폴리오에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④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능동적인(Active) 운용전략을 채택하며, 종목선정과정에서 각 업종 대표주로 구성된 블루칩 모델 포트폴리오에 기반하여 투자대상 종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 상기 운용 전략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이 자료 작성일 현재의 전략을 반영한 예시입니다. 추후 금융시장 상황 및 운용전략의 변화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⑤ 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므로 빈번한 매매로 인하여 매매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매비용의 증가는 투자신탁의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KOSPI * 100%'를 비교지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키움 블루칩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에 90%이상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속성을 반영하였습니다.

KOSPI(한국종합주가지수) :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한국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종합 주가 지수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한 시가총액식 지수

- 비교지수는 시장 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 될 예정입니다.

(3) 위험관리 :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위험 관리를 수행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 관리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최고이사 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리스크관리규정의 재·개정 건을 가지고 있으며, 지침과 펀드 유형별 운용지침 등을 두어 제반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 중요 의사결정을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전략위원회, 집합투자재산평가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독립된 리스크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펀드별 운용목적 및 전략에 부합하는 적절한 리스크 수준 설정하며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를 통한 사전적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4) 적극적인 매매전략의 구사여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여 수익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전략은 그렇지 아니한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비용(매매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 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키움 블루칩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90%이상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이 투자한 국내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위험관리와 초과수익을 위해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파생상품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업종 집중투자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한정된 투자대상, 산업섹터, 업종 또는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

	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은 과거 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물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거래를 하려는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매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이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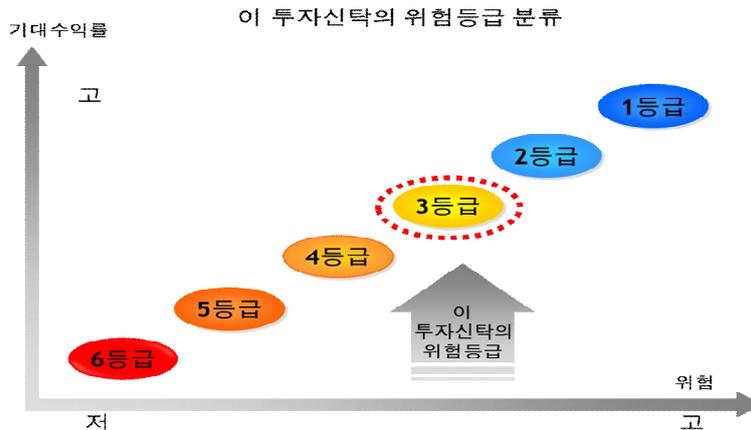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연기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의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임의해지 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조기환매위험	수익자가 환매 요청시 수익증권이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의 환매금액이 작아 질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투자신탁 소규모의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분산투자 등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상배당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배당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

	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 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운용 프로세스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12.25%로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여유자금을 투자하여 주식투자의 기본속성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결산시점에 측정하며, 최직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이전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연율화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 등급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분류기준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주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1등급)부터 매우 낮은 위험 수준(6등급)까지 6단계로 펀드의 위험수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가입자격

-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 준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013년 2월28일 이전에 “수익증권 통장 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 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봅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15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

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하며,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2013년2월28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 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는 수익증권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자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그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①수익자는 투자기간 중에 신탁재산을 환매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하신 판매회사에 따라 일부 펀드로의 전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키움연금자자손손백년투자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키움연금자자손손백년투자40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3. 키움연금알파인덱스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4. 키움연금장대트리플플러스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②제1항 각 호의 투자신탁이외의 다른 투자신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의 변경의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③수익자가 **키움연금자자손손백년투자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키움연금알파인덱스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④수익자가 **키움연금자자손손백년투자40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⑤수익자가 **키움연금장대트리플플러스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2.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전환처리 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제3항 내지 제5항의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로 합니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그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⑦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시 30분 이전까지로 하되 15시 30분 경과 후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하고, 제5항에 의한 전환청구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전환전 투자신탁	전환후 투자신탁	전환전 투자신탁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전환후 투자신탁 매입기준가격적용일		영업일
		15시 30분 이전	15시 30분 이후	15시 30분 이전	15시 30분 이후	
키움연금자자손손백년 투자전환형1호[주식]	타투자신탁	2영업일	3영업일	4영업일	4영업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키움연금자자손손백년 투자40전환형1호[채권 혼합]	타투자신탁	3영업일	4영업일	4영업일	5영업일
키움연금알파인덱스전환형1호[주식-파생형]	타투자신탁	2영업일	3영업일	4영업일	4영업일
전환전 투자신탁	전환후 투자신탁	17시이전	17시이후	17시이전	17시이후
키움연금장대트리플플러 스텐환형1호[채권혼합]	타투자신탁	3영업일	4영업일	4영업일	5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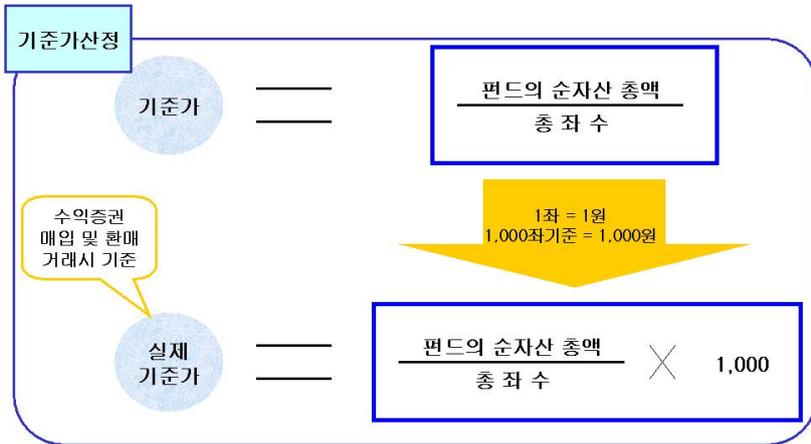
②2013년2월28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 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는 수익 증권 일부에 대한 전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 (http://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 방법
①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 비등록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③	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④	비상장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⑤	기업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⑥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 사항을 의결함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부과기준
가입자격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선취 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
후취 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전환수수료	없음	전환시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순자산총액의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0.35	최초 설정일로부터 매3개월
판매회사 보수	0.95	
신탁업자 보수	0.03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5	
기타비용	0.0001	사유 발생시
총 보수·비용	1.3451	-
합성 총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 보수·비용 포함)	1.3453	-
증권 거래비용	0.9139	사유 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5.08.29 ~ 2016.08.28]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5.08.29 ~ 2016.08.28]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8	435	762	1,73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지구 총보수·비용 포함)	138	435	762	1,735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거래비용의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다음 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등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관련 자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당해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자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부득이한 연금의 수령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3.3 ~ 5.5%(분리과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이연퇴직소득과 관련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13.3.1전 가입자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면제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 •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주1) 이연퇴직소득과 관련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상기의 내용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과 2015년 5월 6일 시행된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을 반영한 내용이며,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위의 세제우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수익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에 의거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5기 (2015.08.29 ~ 2016.08.28)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4기 (2014.08.29 ~ 2015.08.28)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3기 (2013.08.29 ~ 2014.08.28)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

대차대조표			
항 목	제5기	제4기	제3기
	(2016.08.28)	(2015.08.28)	(2014.08.28)
운용자산	206,350,670	129,451,856	114,268,334
증권	201,869,717	127,795,997	113,716,633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480,953	1,655,859	551,701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154	1,324	5,939,166
자산총계	206,353,824	129,453,180	120,207,50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682,112	399,011	6,246,542
부채총계	682,112	399,011	6,246,542
원본	193,169,607	135,518,733	110,170,684
수익조정금	5,494,423	-752,162	119,877
이익잉여금	7,007,682	-5,712,402	3,670,397
자본총계	205,671,712	129,054,169	113,960,958
손익계산서			
항 목	제5기	제4기	제3기
	(2015.08.29 ~ 2016.08.28)	(2014.08.29 ~ 2015.08.28)	(2013.08.29 ~ 2014.08.28)
운용수익	18,957,494	-4,079,359	12,096,147
이자수익	36,297	12,872	15,034
배당수익	1,516,192	0	0
매매/평가차익(손)	17,405,005	-4,092,231	12,081,113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2,735,014	1,633,043	1,552,303
관련회사 보수	2,735,014	1,633,043	1,552,303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280	0	0
당기순이익	16,222,200	-5,712,402	10,543,844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 원)

과목	제5기(2016.08.28)		제4기(2015.08.28)		제3기(2014.08.28)	
	금	액	금	액	금	액
운용 자산						
현금및예치금		4,480,953		1,655,859		551,701
1. 현금및현금성자산	4,480,953		1,655,859		551,701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0		0		0	
대출채권		0		0		0
1. 콜론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3. 매입어음	0		0		0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201,869,717		127,795,997		113,716,633
1. 지분증권	0		0		0	
2. 채무증권	0		0		0	
3. 수익증권	201,869,717		127,795,997		113,716,633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산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타 자산		3,154		1,324		5,938,379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0		0		5,938,379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3,154		1,324		787	
4. 미수배당금	0		0		0	
5. 기타미수입금	0		0		0	
6. 기타자산	0		0		0	
7. 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206,353,824		129,453,180		120,207,500
부 채						
운용 부채		0		0		0
1. 파생상품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운용부채	0		0		0	
기타 부채		682,112		399,011		6,246,542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0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0		0		5,879,583	
4. 수수료미지급금	682,112		399,011		366,959	
5.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0	
6. 기타미지급금	0		0		0	
부 채 총 계		682,112		399,011		6,246,542
자 본						
1. 원 본	193,169,607		135,518,733		110,170,684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5,494,423		-752,162		119,877	
3. 이월잉여금	7,007,682		-5,712,402		3,670,397	
(발행좌수 당기: 193,169,607 좌 전전기: 135,518,733 좌 전전기: 110,170,684 좌) (기준가격 당기: 1,064.72 원 전전기: 952.30 원 전전기: 1,034.40 원)		7,007,682		-5,712,402		3,670,397
자 본 총 계		205,671,712		129,054,169		113,960,95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06,353,824		129,453,180		120,207,500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제5기(2015.08.29 ~ 2016.08.28)		제4기(2014.08.29 ~ 2015.08.28)		제3기(2013.08.29 ~ 2014.08.28)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552,489		12,872		15,034
1. 이 자 수 익	36,297		12,872		15,034	
2. 배당금수익	1,516,192		0		0	
3. 수수료수익	0		0		0	
4. 기타투자수익	0		0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0,135,766		9,615,355		12,081,113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20,135,766		9,615,355		12,081,113	
4. 현금및대체채권매매/평가차익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7. 기타차익	0		0		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730,761		13,707,586		0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2,730,761		13,707,586		0	
4. 현금및대체채권매매/평가차손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7. 기타차손	0		0		0	
운 용 비 용		2,735,294		1,633,043		1,552,303
1. 운용수수료	711,712		424,964		403,952	
2. 판매수수료	1,931,867		1,153,618		1,096,761	
3. 수탁수수료	60,967		36,335		34,456	
4. 지급수수료	30,468		18,126		17,134	
5. 기타비용	280		0		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6,222,200		-5,712,402		10,543,844
좌달순이익(또는 좌달순손실)		0.08397905		-0.042152121		0.09570462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15.08.29~2016.08.28	1.36	1.29	2.66	2.76	2.09	2.16	1.93	1.93
2014.08.29~2015.08.28	1.10	1.10	0.62	0.61	0.37	0.36	1.36	1.29
2013.08.29~2014.08.28	1.03	0.97	0.37	0.37	0.30	0.31	1.10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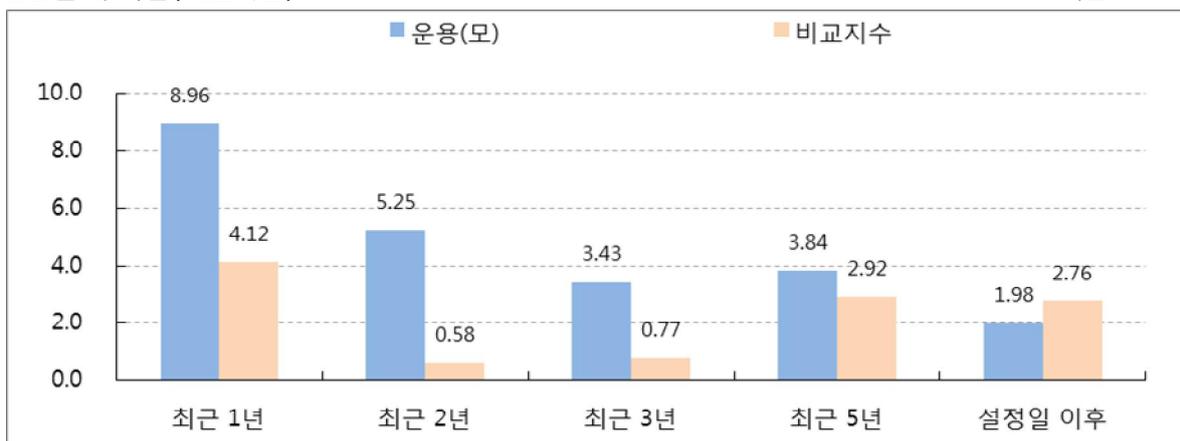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



종류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15.10.01~ 2016.09.30	2014.10.01~ 2016.09.30	2013.10.01~ 2016.09.30	2011.10.01~ 2016.09.30	설정일~ 2016.09.30
운용(모)	2011.08.29	8.96	5.25	3.43	3.84	1.98
비교지수		4.12	0.58	0.77	2.92	2.76

주1) 비교지수 : KOSPI *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단위 : %)



종류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5.10.01~ 2016.09.30	2014.10.01~ 2015.09.30	2013.10.01~ 2014.09.30	2012.10.01~ 2013.09.30	2011.10.01~ 2012.09.30
운용(모)	2011.08.29	8.96	1.66	-0.12	-0.69	9.91
비교지수		4.12	-2.84	1.16	0.04	1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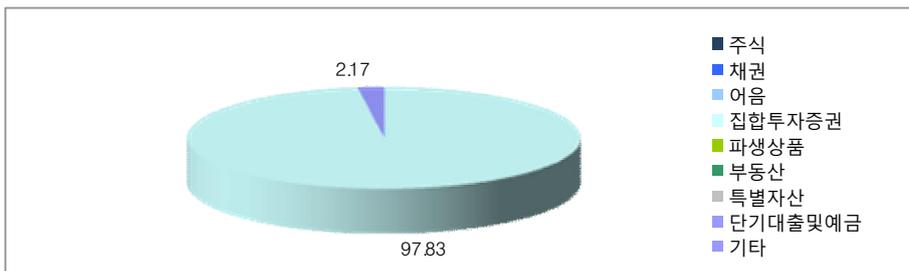
주1) 비교지수 : KOSPI *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 투자신탁의 자산 구성 현황



[2016.08.28 현재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0.0	0.0	0.0	2.0	0.0	0.0	0.0	0.0	0.0	0.0	0.0	2.1
	(0.00)	(0.00)	(0.00)	(97.83)	(0.00)	(0.00)	(0.00)	(0.00)	(0.00)	(2.17)	(0.00)	(100.00)
KRW	0.0	0.0	0.0	2.0	0.0	0.0	0.0	0.0	0.0	0.0	0.0	2.1
	(0.00)	(0.00)	(0.00)	(97.83)	(0.00)	(0.00)	(0.00)	(0.00)	(0.00)	(2.17)	(0.00)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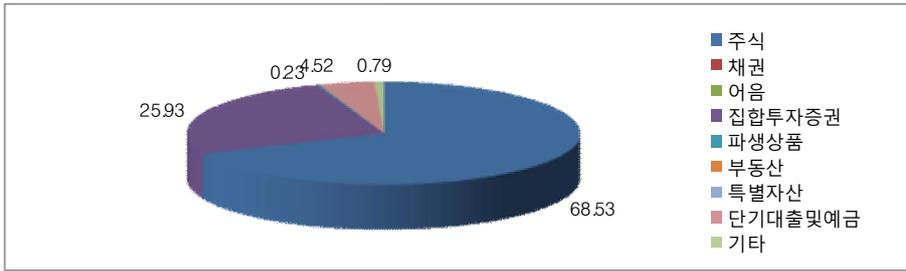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모두자신탁의 자산 구성 현황

A. 키움블루칩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6.07.26 현재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32.6 (68.53)	0.0 (0.00)	0.0 (0.00)	12.3 (25.93)	0.1 (0.23)	0.0 (0.00)	0.0 (0.00)	0.0 (0.00)	0.0 (0.00)	2.1 (4.52)	0.4 (0.79)	47.6 (100.00)
KRW	32.6 (68.53)	0.0 (0.00)	0.0 (0.00)	12.3 (25.93)	0.1 (0.23)	0.0 (0.00)	0.0 (0.00)	0.0 (0.00)	0.0 (0.00)	2.1 (4.52)	0.4 (0.79)	47.6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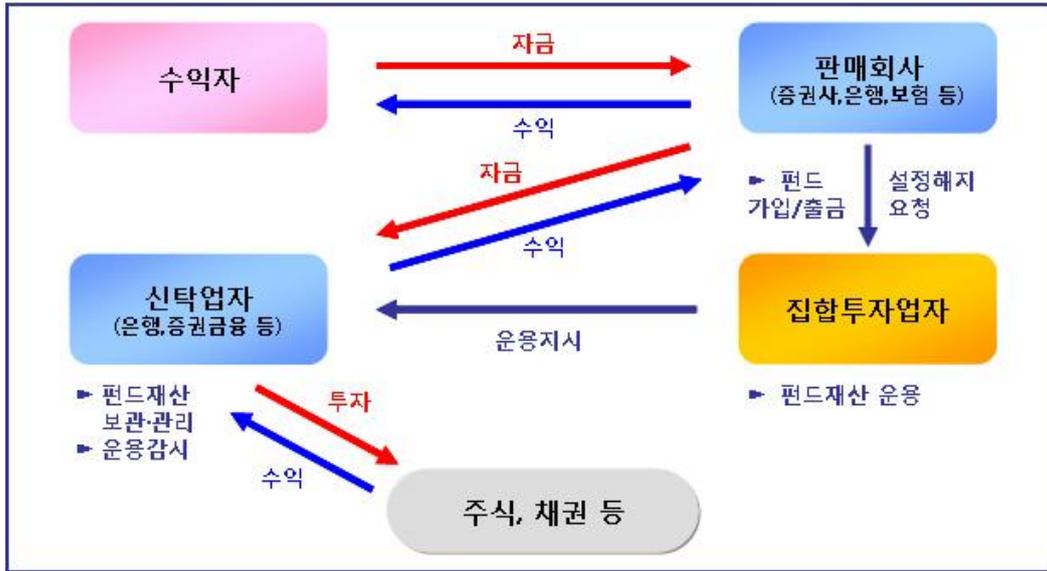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라)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구성 현황

- | | |
|-------------------------|---------|
| ①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②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③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④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⑤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⑥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⑦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1) 회사개요

회사명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연락처: 02) 789-0300 / www.kiwoomam.com)
회사연혁	1988.03 럭키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0.09 미국 SEC 투자자문업 등록 1995.02 LG투자자문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96.07 LG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및 업종 전환 1997.04 투자자문 일임업 허가 2004.12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 2005.06 우리자산운용 출범 LG투자신탁운용, 우리투자신탁운용 양사 합병. 자본금 491억 2005.09 자본금 감자(총 491억 ⇒ 333억) 2006.06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출범 Credit Suisse사와 합작 2009.05 우리자산운용 사명변경 2014.12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출범 (우리자산운용과 키움자산운용의 합병)
자본금	410억원
주요주주현황	키움증권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기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서 규정한 사항

나. 의무 및 책임

-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우리펀드서비스(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억 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2015.12.31	2014.12.31	구분	2015.01.01 ~2015.12.31	2014.01.01 ~2014.12.31
현금및예치금	27	360	영업수익	461	318
유가증권	867	389	영업비용	264	219
대출채권	101	139	영업이익	197	99
유형자산	6	6	영업외수익	1	1
기타자산	106	129	영업외비용	1	1
자산총계	1,108	1,023	법인세비용차감 전 순이익	188	99
예수부채	3	3	법인세비용	42	5
기타부채	64	133	당기순이익	146	94
부채총계	67	137	기타포괄손익	8	(0.4)
자본금	410	410	총포괄손익	154	94
자본잉여금	173	173			
기타포괄손익누 계액	7	(1)			
이익잉여금	450	305			
자본총계	1,040	886			
부채및자본총계	1,108	1,023			

4) 운용자산규모

[2016.09.30 현재 / 단위 : 억 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11,485	76,440	4,589	5,510	10,203	12,857	23,880	259	83,500	228,722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1) 회사개요

회사명	(주)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T.1644-9999) www.kbstar.com
회사 연혁 등	2001.11 국민은행, 주택은행 합병 2007.12 국내은행 최초 바젤 II 신용리스크 기본내부등급법 사용승인 획득 2008.09 KB금융지주 공식 출범 2010.03 국내 수탁은행 최초 수탁고 100조원 달성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의무]

-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3.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5.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투자

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우리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60길 17 (연락처: (02) 3151-3500)
홈페이지	www.woorifs.co.kr

(2) 주요업무

① 주요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②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관련법령 및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한국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 연락처: (02) 399-3350 - 홈페이지: www.koreaap.com
NICE피앤아이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연락처: (02) 398-3900 - 홈페이지: www.nicepni.com
KIS채권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 - 연락처: (02) 3215-1400 - 홈페이지: www.bond.co.kr
에프엔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 연락처: (02) 721-5300 - 홈페이지: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① 주요업무

- 채권시기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② 의무와 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모두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여 자투자신탁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로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각 자투자신탁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투자신탁 수익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용에 비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 221 조제 6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 221 조제 7 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245 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 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5.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 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법에서 정한 소규모 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펀드로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보고서

가.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까지 이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합니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 투자신탁의 해지

나. 자산운용보고서

-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의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을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합니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법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광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광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광고합니다.

주2)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규약의 단순한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나.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게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투자신탁이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다.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선정 기준	
증권	주식 및 인덱스	정보제공 및 주문집행 능력, 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매매수수료를 배분
	채권	리서치, 거래능력, 중개사 리스크, 백오피스 업무의 신속성/정확도, 매매체결 오류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배분
장내파생상품	증권의 거래와 유사	

주1) 해외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중개회사 선정은 해당 위탁운용사의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주2)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	2 인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자금으로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된 투자대상 자산	집합투자계약의 투자목적에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산(주식, 채권, 상품, ELS등)을 말하며,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자산입니다.
개방형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뿐 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